

예비비(도시개발특별회계) 지출 보고

“동대문 성곽공원 조성 사업” 관련 행정소송 종국결과, 토지 보상금 증액 지급 토록 확정되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예비비를 활용 지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.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동대문성곽공원 조성(이대 동대문병원 및 동대문교회 이전)
- 사업내용 : 공원조성(11,519.7 m^2)-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
- 사업기간 : '07.12.17. ~ '14.12.31.
- 사업비 : 1,501억원(보상금 1,308억원, 공사비 193억)

□ 예비비 지출 보고

○ 예비비 집행 사유

- 동대문성곽공원 조성사업은 '14년 완료된 사업으로서, 소송 경과 미정에 따른 '16년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판결금 예산이 미확보 되어
- 연 20%의 지연이자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을 지급하였음.

○ 예비비 집행 내역

- 지출일시 : '16. 4. 8.(예비비 사용 승인 : '16.3.21)
- 지급대상 : (재)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
- 지출사유 : 행정소송 판결금 지급(토지보상금 증액분)
- 지출액 : 349,460천원
- 예비비 현황

(단위: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예산과목			예산액	금회사용액		잔액
	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일반예산 (예비비)	예비비 (도시개발)	예비비 (도시개발)	일반예비비	예비비 (801-01)	4,298,820		△350,585	2,363,563
지속가능한 역사문화 도심구현	도심역사 문화자원 관리	이대동대문 병원 및 교회 공원화	시설비 및 부대비	시설비 (401-01)	11,700	350,585		362,285

※ '16년 예산 11,700천원은 공원유지관리 용역비이며,
예비비 금회 사용액 350,585천원(이자발생 추정계산) 중 실 집행액은 349,460천원임.

붙임 : 소송개요 1부.

<붙임>

소송 개요

□ 사건개요

- 사건번호 : 2015두 382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(대법원)
 - * 1심(2012구합 18264 서울행정법원), 2심(2015누1139 서울고등법원)
- 당사자
 - 원 고(항소인) :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
 - 피 고(피항소인)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주위적), 서울특별시(예비적)
- 청구취지 : 보상협의 절차이행 위법성(재결취소) 및 보상금 증액 청구

□ 소송경위

- '12. 6. 7. : 소장 접수(서울행정법원)
- '15. 3.27. : 1심 판결 선고 - 원고 일부 승
 -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기각
 - 보상금(토지) 증액 256백만원 지급 판결 (서울시 패소)
 - 2012.2.9. ~ 2015.3.27.(판결선고일) : 연 5% 이자 - 40,140,025원
 - 2015.3.28. ~ 다 갚는 날 : 연 20% 이자 - 140,472원/일
 - 원고와 예비적 피고(서울시) 사이의 소송비용은 예비적 피고(서울시) 부담

<판결 이유> - 서울시 패소 부분(보상금 증액)

- 법원 감정인이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·형상·환경·이용상황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보상금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, 법원감정의 품등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함.

○ '15. 4.10. : 항소 포기 결정-서울시(서울고등검찰청 지휘)

- 법원감정결과와 재결감정결과중에서 어느 것을 취신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취 볼 때, 법원에서 지정한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내용중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법원의 재량권 행사가 타당함.
-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 선고 예상되며, 보상금 증액률이 1.48%에 불과하여 항소실익이 적음.

※ 보상금 현황

- 수용재결 보상금 : 17,337,382,130원
- 법원판결 보상금 : 17,593,744,500원 (256,362,370원 증액, 1.48%)

○ '15. 4.30. : 원고 항소(서울고등법원)

-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 승계에 따라 수용재결 또한 무효임.

○ '15.10.13. : 2심 판결 선고 - 원고 패소

- 원고 항소 기각(1심 판결 인용)
- 항소비용 원고 부담

〈판결 이유〉

- 원고가 제기한 2009구합3392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소송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 이후,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,
- 선행판결에 의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, 적법하다고 인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하자로 인해 후행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판력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음.

○ '15.11.10. : 원고 상고(대법원)

○ '16. 2.25. : 3심 판결 선고 - 원고 패소

- 종국 : 심리불속행기각 (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해당)
- 상고비용 원고 부담

○ '16. 2.29. : 판결 확정